



우리나라의 電氣料金

1. 公共料金으로서의 特性

一般的으로 公益事業은 日常生活에 必須의 인 「서비스」를 모든 需要者가 必要로 하는 時間과 場所에 區別 없이 提供할 義務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事業經營의 經濟的 能率性을 위하여 그 獨占性이 認定되고 있다고 理解되고 있다. 특히 電力事業은 現在의 需要者는 물론 將來의 需要者의 需用에 副應하여 良質의 電力「서비스」를 適正하고도 公平한 料金으로 永續的으로 供給할 社會의 責任을 지니고 있음을 考慮할 때 電力事業은 代表의인 公益事業의 位置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公益事業이 國民의 日常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크고 企業의 性質上 獨占經營이 公的으로 容認되고 있어 公益事業의 料金 即 公共料金은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一定한 基準을 定하여 그 範圍內에서 料金을 定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豫算會計法 第3條(公共料金의 決定)와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4條(公共料金等의 決定)에서 獨占事業의 專賣價格이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料金은 物價安定委員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裁可를 받아 施行통令 規制하고 있다. 이러한 公共料金의 規制는 消費者와 事業者를 同時

에 保護하고 價格機能을 通하여 國民의 自由로운 選擇에 依하도록 하는데 그 깊은 意味가 있으며, 이러한 點에서 需要와 供給에서 決定되는 一般商品價格과는 다른 特性이 있는 것이다.

2. 料金 構造 및 電力消費實績

가. 電氣料金 構造

現行 電氣料金의 種別은 家庭用인 一般電力 “甲”, 非產業用인 一般電力 “乙”製造業인 產業用電力, 糧穀生產과 果樹栽培用인 農事用電力 및 公共照明用인 街路燈으로 區分되어, 料金構造는 1973年 石油波動以後 에너지 高價時代에 適應할 수 있도록 物價 및 電力使用者에게 큰 影響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調整되어 왔으나 現在에도 改善되어야 할 點이 많이 있다고 본다.

現行 電氣料金의 種別 料金構造는 다음과 같다.

(1) 一般電力“甲”

家庭用과 4kw 未滿의 小單位 事務室, 商街에 適用되는 一般電力“甲”的 料金構造는 使用電力量을 처음 50kWh, 다음 50kWh, 다음 50kWh, 다음 350kWh, 500kWh 超過使用的 5段階로 區分하여 段階別로 料金負擔이 많아지는 遷增料金體制이다.

이 料金構造는 電力使用 增加에 따라 料金負擔이 커지는 4段階 遷減制이던 것을 1973年 石

構造에 대하여

尹 承 植

〈勤資部電力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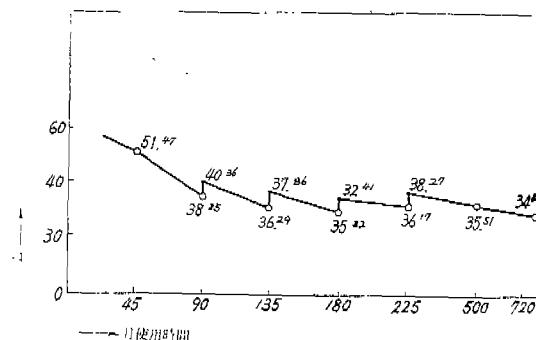
油波動以後 單一料金 構造로 부터 漸進的으로 改善하여 1975. 12에 5段階 遞增料金을 採擇하여 現在에 이르른 것이다.

段階別 料金 水準을 보면 月間 家庭의 基本 使用量인 100kWh 까지는 供給原價以下로 策定되었고, 100kWh 超過 500kWh 까지는 供給原價를 若干 上廻하는 水準으로 策定되었으며, 月 500kWh 以上의 大量使用에는 供給原價를 크게 上廻하는 料金을 策定하여 少量使用需用家는 低廉한 料金을 適用하여, 低所得層의 負擔을 輕減 시켰으며, 大量 使用需用家에는 高率料金을 適用하여 消費節約를 誘導하는 料金體制를 採擇하고 있다. 現家庭用 料金構造는需用家の 料金負擔能力과 「서비스」(電力)의 價值를 基準으로 定立되었으나 料金計算 業務와需用家가 料金을 理解하는데 若干 複雜性을 가지고 있다.

(2) 一般電力“乙”

非產業用인 一般電力“乙”的 料金構造는 契約

表 1. 段階別 販賣單價屈曲現狀(需用料金 포함)



電力에 對하여 月使用時間은 基準으로 90時間 使用時, 90時間超過 135時間 使用時, 135時間超過 180時間 使用時, 180時間超過 225時間 使用時, 225時間 超過 使用時의 5段階로 區分하고, 料金은 한 使用區分料金을 모든 使用量에 適用하는 一括遞增 料金制이다. 料金 計算例를 說明하면 月 90時間以内 使用時에는 kWh當 24.35원 인데 어느 需用家가 140時間을 使用하였을 時遇 135時間超過 180時間 使用塊量 料金인 kWh當 27.59원을 該當月의 全使用量에 適用한다. 이 制度는 一定한 限界를 超過 使用치 않도록 하여 어면 使用區分을 조금 超過 使用하는 需用家에 對하여는 可能한 節約하여 앞 段階로 끌어 당겨 消費節約를 強力히 誘導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 料金構造는 消費節約의 一環策으로 採擇되어 節約의 側面에서는 理解될 수 있으나 (表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段階別 料金單價의 屈曲 現狀으로 原價構造와는相反되는 料金負擔이라는 點등에서 問題點이 없지 않다고 본다.

(3) 產業用電力

製造業 需用에 適用되는 產業用電力은 契約最大電力 500kw 未滿과 그以上으로 區分하여 500kw 未滿은 產業用電力 “甲”, 500kw 以上은 產業用電力 “乙”로 分類되어 料金構造는 다음과 같다.

(1) 產業用電力“甲”

契約最大電力 500kw 未滿의 產業用電力와 上水道, 電氣鐵道 등一部 特別需用에 適用하되 料金構造는 契約電力에 對하여 처음 90時間 使用分, 다음 90時間 使用分, 180時間 超過 使用分의 3段階로 區分하여 段階별로 料金이 低廉해지는 遞減料金制이다.

이 料金構造는 電力供給 原價中 燃料費 構成比가 20% 水準으로 電力原價의 特性이 遞減型일 때의 體系이나, 에너지 波動以後 繼續되는 燃料價格의 昂騰으로 現在는 電力原價의 特性이 오히려 增分原價의 性質로 遞增型이 되었으며 特

한 產業用의 3段階料金은 電力損失을勘案하면燃料費水準에도 未達되는 低率이므로 現行 3段階遞減 料金制는 에너지節約을 誘導해야 할 現時點으로서는 時宜에 맞지 않는 料金體制로 본다.

(4) 產業用 電力“乙”

契約最大電力 500kw 以上業 製造業 需用에 適用하여 料金構造는 “피크타임”料金이라 불리우는 最大需要調節料金을 導入하여 1977. 12. 1부터 施行中에 있다. 이 “피크타임”料金制는 過去의 平均原價料金에서 限界費用原價料金을 採擇한 것이다.

平均原價 料金制는 電力使用時間에 關係없이 同一한 料金을 適用하는 것이므로 이는 需要者가 어느 時間に 電力を 使用하면 經濟的 負擔이 同一하게 되므로 需要者에게 電力使用時間 to 調節케 하는 機能이 없다.

그러나 電力需給은 24時間 一定한 것이 아니고 深夜에는 초저녁의 “피크負荷”와 比較하면 50% 水準에 不過하고 畫間에는 平均負荷에 相應하는 中間需要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日 24時間中 “피크負荷”를 이루는 초저녁 3~4時間을 爲하여 電力會社는 過重한 設備를 保有하여야 하고 이는 結果的으로 非效率의이며 非經濟的인 設備投資를 誘發하고 電力原價上昇의 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經濟的인 電力需給과 效率의인 設備運用을 위하여 “피크負荷”的 分散을 誘導코자 “피크타임”料金制를 導入施行하게 된 것이다.

“피크負荷”的 分散은 料金構造를 “電力追加生產에 所要되는 費用 即 限界原價”의 理論에 따라 高效率發電施設이稼動되는 需要가 낮은 深夜에는 낮은 料金을 그리고 低效率發電施設 및 特定時間에만 運轉되는 追加設備까지 稼動되는 “피크負荷”時間에는 高率料金을, 그리고 中間負荷인 畫間에는 平均料金을 適用함으로서 (時間帶別 區分 : 表Ⅱ 參照) 需用家 스스로 電力使用

時間을 選擇하여 負荷調節을 期할 수 있도록 料金에 負荷調節 機能을 마련해 준 것이다. 即 需要者에게 負荷調節의 動機를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表-II 電力使用時間帶別 區分

季節別	夏季(3~9月)	冬季(10~2月)	備考
輕負荷帶(深夜)	22:00~06:00	22:00~06:00	
重負荷帶(晝間)	06:00~19:00	06:00~18:00	
最 大 負 荷 帶 (초 저 夜)	19:00~22:00	18:00~22:00	

但, 日曜日은 最大負荷帶를 重負荷帶로 함.

이 “피크타임”料金施行으로 “피크負荷”는 約 160,000kw 가 調節되었으며 平均電力에 對한 比率을 보면 1964年에 平均電力 100에 對하여 最大電力이 127.2, 1976年에는 平均電力 100에 對하여 127.3으로 10餘年間 그 比率이 變化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피크타임”料金이 施行된 1977年에는 平均電力 100에 對하여 最大電力은 120.6으로 時間帶別 負荷가 平準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外國의 例를 보면 佛蘭西의 境遇이 料金施行前에는 平均電力 100에 對하여 最大電力이 128이었던 것이 “피크타임”料金施行 後에는 最大電力이 119로 되어 負荷抑制에 寄與하고 있다고 分析되고 있다.

이와같은 “피크分散”에 依한 負荷抑制는 設備投資가 節減될 뿐 아니라 無公害 發電所를 建設하는 것과 同一한 效果를 舉揚하는 것이며 이는 環境保存에도 크게 寄與하는 것이다.

이 “피크타임”料金制는 現在 產業用으로서 500kw 以上의 大單位 需用에 限하여 適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一部 需用에 限하여 施行하는 것은 全般的인 效率的設備運用과 適正한 資源分配에 未洽한 點이 있다고 본다.

(4) 農事用 電力, 街路燈

① 農事用 電力

糧穀生產 및 果樹栽培에 適用되는 農事用 電力은 單一料金體制로서 現在 料金構造는 合理的이나 需用의 特殊性을 考案하여 料金水準은 低廉하게 策定하고 있다.

② 街路燈

公園, 街路의 公衆照明에 適用되는 街路燈은 定額需用으로서 電力 供給時間에 따라 負荷設備를 基準으로 設備單位(w)當 單一 料金體制로서 料金構造에 別問題點이 없다.

나. 種別電力 消費實績

電氣料金 種別로 電力消費는 (表I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產業用電力이 全體의 77.2%로서 大宗을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家庭用인 一般電力“甲”으로서 12.9%를 차지하고 있다. 種別 電力消費는 앞으로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農漁村 所得이 增大됨에 따라 家庭用의 電力使用이 漸次 增大될 것으로 보여 農事方法의 電化에 따라 農事用電力 역시 그 使用이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III 1977 電力消費實績

(單位: 百萬kWh)

種 別	電力消費量	構 成 比 (%)
一般電力 “甲”	2,941	12.9
“乙”	2,060	9.0
產業用電力	17,623	77.2
農事用電力	157	0.7
街路燈	52	0.2
合 計	22,833	100.0

3. 料金의 構造改善

電氣料金 構造는 에너지價格 機能面에서 國家의 에너지 政策을合理的으로 違行할 수 있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現行 料金構造는 에너지 資源의 最適活用과 電力의合理的 使用으로 消費節約을 期할수 있도록 策定되었으나 未治한점에 對

하여는 앞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 一般電力 “甲”

一般電力 “甲”은 現在의 5段階 遷增制를 3段階 遷增體制로 段階를 單純화하도록 改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家庭別 電力使用量의 差異가 많아 段階를 놓이는 것은 困難視되나 앞으로 使用電力量이 一定한 水準으로 平準화되면 改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一般電力 “乙”

一般電力“乙”은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電力を 가장 效率的으로 使用하도록 에너지 節約을 強力히 誘導할 수 있는 段階別 一括遞增制를 採擇하고 있으나, 이제 에너지 消費節約이 生活化되고, 商街等 非產業用의 電氣設備가 制度의 으로 規制되고 있으므로 料金構造를 一括遞增制에서 電力供給原價를 反映하여 追加 使用量에 遷增料金을 適用하는 5段階 遷增料金制로 改善함이 바람직하다.

다. 產業用 電力

그동안 產業用 電力料金은 工產品의 製造原價에 미치는 影響과 國際競爭力등을 考慮한 產業政策의 側面에서 料金의構造와 水準에 큰 變動敘이 電力供給原價 上昇分만을 考案하여 現狀을 維持하는 線에서 調整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政策 및 電力事業도 考案한 電力料金 體制로 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產業用 電力“甲”

現在는 電力使用量의 增加에 따라 料金負擔이 低廉해지는 3段階 遷減制로서 3段階 塊量의 料率은 電力供給 損失을 考案하면 燃料費 水準에도 未達되는 것으로서, 이는 高價에너지의 浪費를 勸獎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料金構造로서 에너지波動 以後 外國에서는 불수 없는 料金體制

인바 이는 앞으로 반드시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電力供給原價構造에相應한適正한料金構造는增分原價를反映한一定量以上의使用分에對하여는遞增料金制가바람직하나,產業全般에미치는影響을考慮하여一次的으로單一料金體制로改善하여高價에너지時代에對應해야할것으로본다.

(2) 產業用電力“乙”

電力設備의效率的運用으로投資節減과經濟的電力需給을圖謀하고에너지資源의適正配分을期하고서契約最大電力500kw以上의產業

用電力“乙”需用에對하여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파크타임”料金이라불리우는“最大需要調節料金”을適用하고있는바그施行結果는當初豫想대로效果가크므로앞으로500kw以下의產業用電力도擴大施行하는方案이檢討되어야할것으로본다.

라. 農事用電力 및 街路燈

위에서說明된바와같이農事用電力과街路燈은料金構造面에서不合理한點이있으므로그需用의特殊性을勘案하여現行料金體制로繼續維持되어야할것이다.

◎ 大單位需用家에履行촉구 ◎

—韓電, 電氣使用前통지강조—

韓電에서는법령에규정된電氣使用前통지제도의이행을일반에게촉구하고있다.

이제도는전기사업법제21조및동시행령제12조와시행규칙제22조에규정되어있는것으로그내용은①수전전력501kw이상1,000kw미만을신증설하고자할경우에는수전예정일로부터1년전까지②1,000kw이상5,000kw미만은1년6개월전까지③5,000kw이상은2년전까지각부공급전압,공급방식,수전설비용량,예상수전전력량및수전예정일을정하여소정통지서에기입한후한전각관할지점에통지도록되어있다.

지난4일한전은매단위수용가에게충분한전력을전기에공급하기위한이제도에대해일반에게주의를환기시켰는데특히신개발지구에있어서는그필요성이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